

環境庁告示 (第82-1号)

環境保全法 第27条 2 의 규정에 의한 燃料用 油類의 硫黃含有 基準告示 (81. 6. 1. 環境庁告示 第81-8号)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하여 이를 告示한다.

1982. 1. 4

環 境 庁 長

[제 1 호서식]

燃料用 油類의 硫黃含有 基準告示中 改正(案)

제 1 조 (目的) 이 告示는 환경 보전법 제27조 2 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用語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중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질중유, 중유, 빙커C유 및 경유를 말한다.

2. “유황함유량”이라 함은 연료용 유류속에 함유된 유황분의 중량백분율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4. “低硫黃 燃料油”라 함은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말한다.

5. “자동차의 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1437.2-

198 .

수 신 환경청장

발신 ○○○ ○○○

저유황 연료유 사용(변경) 계획서

사업자	①업 종	②소재지			
현황	③대표자	④배출시설 관리인	⑤배출시설 허가일	19 . . .	
	⑥유종	⑦유황함유량 (%)		⑧사용량 (Kℓ)	년: 월(최대):
	⑨사용용도 (해당사항 ○표)	산업, 발전, 난방, 기타()	⑩대기오염 방지시설		
	⑪저장용량 (Kℓ)	(탱크수:)	⑫구입방법 (해당사항 ○표)	정유공장, 대리점, 주유소, 기타()	
사용 (변경) 계획	⑬유종	⑭유황함유량 (%)	⑮사용량 (Kℓ)	년: 월(최대):	
	⑯사용(변경) 개시일	19 . . .	⑰변경사유		

첨부: 연료의 개선, 대체 또는 배연탈황시설 설치에 의하여 연료를 변경할 때에는 계획서 1부

를 말한다.

6. “석유정제업자”라함은 석유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지역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仁川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전사업자 및 동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자

2. 경기도 관할 구역중 다음 시·군안의 사업자.

가. 富川市

나. 始興郡

다. 光明市

라. 安養市

마. 城南市

바. 議政府市

3. 京畿道 및 釜山직할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자

4. 蔚山市 및 仁川직할시에 소재한 발전소

제 4 조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 기준)

(1) 연료용유류의 유황 함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사업자 및 자동차의 사용자는 저유황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료의 변경 또는 대체를 계획중이거나 또는 배연탈황 시설 설치를 계획중인 자로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공정중에서 흡수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제 5 조 (저유황연료유 사용계획)

(제출) 사업자는 저유황연료유 사용개시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저유황연료유 사용계획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시지사”라한다)를 경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 (저유황연료유 사용명령)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보전법 제 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유황함유 기준을 초과한 유류의 사용을 제한하고 저유황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 7 조 (실적보고) 사업자,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는 저유황연료유의 생산, 판매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별지 제 3호 서식 및 별지 제 3-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지사를 경

[제 2 호 서식]

(# 2)

저유황연료유사용명령서

제 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1.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제27조의 2 및 환경청고시 제82-1호 제 6조 규정에 의거 귀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유황연료유를 사용하도록 명령함.

가. 사용할 연료의 유황함유 기준

유종 기준	경질중유 (B-A)	중유 (B-B)	B-C 유	경유
유황분 (%)	1.6 이하	1.6 이하	1.6 이하	0.4 이하

다만, 경유는 차량용에 한함.

나. 저유황연료유 사용 개시일 : 1982. 3. 1. 부터

2. 동 고시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유황연료유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전 10일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제출할 것.

3. 연료의 개선, 대체 또는 배연탈황시설 설치 계획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할 것.

4. 특별한 사유없이 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환경보전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첨언합니다.

1982. 1. 4

환경청장

[제3-2호 서식]

(업 소 명)

분류기호 1437.2-

198

수 신 환경청장

발신 ○ ○ ○ ①

/ 4 분기 저유황 연료유 생산(수입) 공급 실적보고

단위 물량 : Kℓ
유황분 : Wt %

사업자	① 대표자			② 업종	석유정제업, 수입업(해당사항 ○표)			
	③ 소재지			④ 전화	사무실 : () 공장 : ()			
원유 도입 실적		산지별		⑤()산	()산	()산	()산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도입량계						
구 분		유종		⑥ B-C유	⑦ B-B 유	⑧ B-A 유	⑨ 경유 S : 0.4%	⑩ 등유 S : 1.0%
		S : 1.6%	S : 2.5%	S : 4%				
주 입 공 출 실 척	생산	⑬ 전월재고	생 산					
		수 입						
		() 월						
		() 월						
	수입	() 월						
		계						
		() 월						
		() 월						
	출고	() 월						
		계						
		() 월						
		() 월						
	자가소비	() 월						
		계						
		() 월						
		() 월						
	년 누계	생 산						
		수 입						

유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유황분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유황함유량 분석 방법은 한국공업규격 KSM 2027, KSM 2060 또는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최신정밀 분석방법에 의한다.

제9조 (시험분석 기관)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소
2. 서울특별시 촉합기술 시험연구소
3. 시·도 보전연구소
4. 기타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제10조 (확인검사) 환경청장은 저유황연료유의 사용여부, 사용실적, 생산판매 및 유황함유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자동차의 사용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정제업자의 사업장 및 자동차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이告示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蔚山市 및 仁川직할시에 소재한 발전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간평균 1일 연료사용량중 3,180Kℓ 이상을 유

황함유량 2.5% 이하로 각각사

용하고, 잔여사용량은 유황함

유량 4.0% 이하로 사용할수있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蔚山市

및 仁川직할시에 소재한 발전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간평균 1일 연료사용량중 3,180Kℓ 이상을 유황함유량 2.5% 이하로 각각사용하고, 잔여사용량은 유황함유량 4.0% 이하로 사용할수있다. *

[제3호서식]

(업 소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1437. 2 - 198 . . . 수 신 환경청장 발신 ○○○ ①								
/ 4분기 저유황 연료유 사용실적 보고								
단위 : Kℓ								
사 업 자	①업 종		②소 재 지		③대 표 차		④배 출 시 설 관 리 선 인	
							⑤종 업 원	제() 남() 여()
	⑥주요생 산제품		⑦용 도 (해당사항○표)	산업, 난 방, 발전 기타()	⑧유류저장 용 량			
구 분 입 및 사 용 실 적	유종 유황분	⑨B-C유 1.6%	⑩B-B 유 2.5%	⑪B-A 유 4.0%	⑫경 유 0.4%	⑬등유 1.0%	⑭기타 (나프타등)	
	⑯전분기재고							
	⑯()월							
	⑯()월							
	⑯()월							
	계							
	⑯()월							
	⑯()월							
	⑯()월							
	계							
⑯분기말재고								
기 타	⑯고체연료사용량	연료명 : () 사용량 : () 톤 / 월						
	⑯참고사항 : (1. 저유황유 불사용 자유) (2. 연료대체, 개선계획)							

5303-17D

81. 6. 1승인

268mm × 380mm

(신문용지 54g/m²)

[別表1]
연료용유류의유황함유기준

(단위 : Wt%)

유 종 별	유황함유 기 준
경질중유(B-A)	1.6이하
중 유(B-B)	1.6이하
벙커-C유(B-C)	1.6이하
경 유	0.4이하